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50대 정신건강검진·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50대 정신건강검진·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제사무처리 규칙」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6. 3. 2.

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

2. 주요내용

- 가. 50대 정신건강 검진·상담지원사업 목적, 정의,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
(안 제1조 ~ 안 제3조)
- 나. 정신건강검진기관의 지정 및 지원대상, 지원내용을 정함
(안 제4조 ~ 안 제6조)
- 다. 정신건강검진비 청구 및 지급 규정 (안 제7조)
- 라. 지역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8조)
- 마. 검진기관의 검진비 허위 또는 부당 청구시 환수조치 및 검진기관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9조 ~ 안 제10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(참조: 의약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 [【http://www.sdm.go.kr/】](http://www.sdm.go.kr/) (알림·참여→1.알림마당→입법예고)에 전문을 게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여부와 그 이유)

나. 주소·성명(단체의 경우,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전화번호

※ 보내실 곳 :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2 서대문구보건소 의약과
(우편번호 120-826)

※ 기타사항 문의 : 전화 02-330-8685, 팩스 02- 330-1854